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6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강경숙 · 신장식 · 박은정
임호선 · 이해민 · 김재원
서왕진 · 문정복 · 김선민
진선미 · 김준형 · 최혁진
차규근 · 황운하 · 정춘생
백선희 의원(16인)

제안이유

오늘날의 교육은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고교학점제, 교육협동조합, 돌봄교육 등 미래교육과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지역과의 협력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음.

저출생 · 고령화, 인구절벽 등 지역소멸 위기 문제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창조성 넘치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재생을 도모하는 새로운 엔진으로서 교육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음.

마을교육공동체는 배움의 공간을 기존의 학교에서 마을까지 넓혀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특히 분절과 경쟁 등 오늘날 교육이 지닌 문제 해결의 대안이자 미래

교육의 지향점으로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교육공동체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마을의 특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구성원의 이익과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의 구축, 정치적·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을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다. 시·도 교육감은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5년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바.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 등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②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③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④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 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⑤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종교의 교리 등을 지지하지 않고 정치적·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이념을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와 협의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2.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
3.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수립·변경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10조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기초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센터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 지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5. 지역사회의 인력·시설 등 인프라 발굴 및 활동 지원

6.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7. 마을교육공동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센터의 운영
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된 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